

윤락행위 강요·폭력 등 혐의로 업주 고발, 수사 진행 안돼 피해 확산

20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의 부당한 윤락행위 강요와 폭행은 물론 납득할 수 없는 채무변제 요구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법 당국에 법적 처벌을 호소했지만 검찰의 미온적 수사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25일 제주시내 E 일반유흥업소의 윤모(27. 제주시) 서모(26. 부산시) 백모(26. 부산) 씨 등은 업주 이모(39. 여. 제주시 이도1동) 씨를 윤락행위 방지법 및 형법상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8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 한달 평균 2.3회 이상의 윤락행위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절했을시 폭행 등 강압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빛이 전혀 없이 이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업주 이씨가 ‘4년동안 종업원 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2천여만원의 채무관계에 얽매어 있다’고 빚 청산을 요구하며 ‘빛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섬이나 일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업주가 요구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서씨는 “1일 결근할 때는 월급 30만원에서 벌금 형태로 5~10만원을 공제했고 업주 이씨가 쓰던 화장품이나 옷을 ‘쓰라’고 넘겨 준 것도 빛으로 처리했으며 손님의 외상술값 등도 그 테이블에 앉았던 아가씨의 부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윤락강요, 폭행, 불

법 채무의 피해는 서 씨나 백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특히 이들은 “업주 이씨가 지난 2월초 종업원이었던 박모 씨가 빚을 갚지 않는다며 군산 지역 술집에 1천1백만원에 팔아넘긴 적이 있다”고 밝혀 유흥가에서의 인신매매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던 윤 씨의 모친 조모 씨는 “딸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나 부산으로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어느날 갑자기 받고 부랴부랴 빚을 내 1천3백만원을 갚았지만 잔금을 청산하라며 업주 이 씨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일하면서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업주 이씨가 “빛을 갚지 않고 서울로 도망간 년과 아들을 결혼시키겠다”고 남자측 가족에 알려 결혼이 파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며 “현재 임신 4개월인데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감금해 놓고 있던 당시(지난 5월24일)에는 병원에 예약까지 해놓고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서울로 피신해 있다가 조사를 받으러 제주로 내려갔을 때 업주측에 납치당한 후 8시간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고소취하를 강요당해 고소취하장을 써준 후 바로 검찰에 전화를 걸어 경위를 밝히기도 했다고.

제주지검 민생특수반의 담당 검사는 12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월초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밝히며 “서 씨가 고소취하를 한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전화통보는 받았지만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서 고소취하에 대한 취하장을 다시 제출해야 우리가 공소장에 그것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씨에 대한 인신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락여성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직업소개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팔려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세 사람의 고소인이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는 데 조사결과 강제로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기소내용에는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런 검사의 말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서 씨의 경우 업주측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자신을 감금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인신매매는 아닐지라도 윤락행위를 매개로 한 업소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나 소개를 받아 윤락여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불법이기 때문에 군산으로 팔려갔다는 박 씨의 경우는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검찰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11조에는 ‘영업의 목적으로 손넒기 행위·포주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계약조건·대차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이를 무효로 하기’ 때문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명순 기자〉